

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1. 11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
2] 의결사항

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3개사
- (2011-62(서)-292)

○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3개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,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는 “2016.12.31.까지 특정 전문분야를 정하여 방송분야를 변경등록 할 것”을 등록조건으로 부과함

○ 주요 내용

<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	방송유형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스카이쓰리디 (Sky3D)	3D문화 (3D전문채널)	TV	이몽룡	(주)케이티 (50.16%)	1,191.6억원 (35.6억원)

< (주)데일리안티비 변경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데일리안tv (dailiantv)	TV	방송분야	교육	스포츠

< CJ이앤엠(주)의 변경등록(법인분할) 내역 >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
	분할법인	존속법인	신설법인
회사명	CJ이앤엠(주)	CJ이앤엠(주)	가칭 CJ게임홀딩스(주)
납입자본금	1,896억원	1,896억원	5억원
현금성자산	320억원	315억원	5억원
업무구분	방송사업(PP)+게임사업 등	방송사업(PP) 등	게임사업

※ 변경사유 : 방송사업과 게임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에서 게임사업을 분리하여 게임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

나. 「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」(고시)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62(서)-293)

○ 제48차 위원회('11. 8. 31) 보고 후, 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」(고시)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예상 해지비용 기재(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)

- 서비스별 예상 해지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

※ 해지비용 : 위약금, 할인반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이용요금 이외에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

② 기재방법 구체화(안 제4조)

- 이용약관상의 용어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, 용어 통일 및 상호 비교를 위한 ‘표준고지서’ 권고 근거를 규정
- 당초 입법예고안 중 ‘충분한, 오해의 소지 없는’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필수고지사항의 빠짐없는 기재, 쉽고 평이한 용어사용, 청구되는 요금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사용 등으로 구체화

③ 시정권고 제도화(안 제8조)

- 당초 입법예고안 중 ‘시정권고 제도화’ 조항은 사업자 의견을 수용하여 고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고지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 전에 시정권고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

※ 개정안 제8조(시정권고) (..생략..) 위반되는 요금고지서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, 시정권고 내용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기타 개정사항

- (결합상품 고지서 규제) 결합상품 고지서도 동 고시의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함(안 제5조)
- (장애인용 고지서 제공) 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·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 근거 규정 마련(안 제6조 제2항)
- (약정기간 표기) 약정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 의무화(안 제3조 및 별표)

⑤ 향후 추진 일정

- 법제처 등록 및 관보 게재(11월)
- 사업자별 고지서 개선안 마련(12월) 및 시행('12년 상반기)